

구분	결혼 여부	부	모	제출서류	추가서류	비고
필수 서류	미혼	생존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²⁾¹⁾		
		생존	이혼 후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	
		생존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)		
		생존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)		
		생존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	
		생존	재외국인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
		이혼 후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	
		이혼 후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폐쇄인정 ²⁾⁵⁾
		이혼 후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
		이혼 후	이혼 후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
		이혼 후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
		이혼 후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
		이혼 후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
		이혼 후	재외국인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
		이혼 후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	
		이혼 후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폐쇄인정 ²⁾⁵⁾
		이혼 후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	
		이혼 후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	폐쇄인정 ²⁾⁵⁾
		이혼 후	재외국인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폐쇄인정 ²⁾⁵⁾
		이혼 후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
	이혼 후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	
	이혼 후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폐쇄인정 ²⁾⁵⁾	
	이혼 후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	
	이혼 후	재외국인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	
	이혼 후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		
	이혼 후	관계단절	가족관계증명서(부 + 모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주민등록초본 ²⁾⁷⁾		
	이혼 후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	폐쇄인정 ²⁾⁵⁾	
	이혼 후	실종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		
	이혼 후	재외국인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	
	기혼	배우자 생존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²⁾¹⁾		
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			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+ 주민등록등본 ²⁾⁴⁾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²⁾⁶⁾			
배우자 사망	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²⁾⁶⁾			
배우자 실종	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명 서류 ²⁾²⁾			
배우자가 재외국인·외국인	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	
배우자가 재외국인·외국인			가족관계증명서(학생)	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 ²⁾³⁾		

- 서류 확인 시, '학자금 신청일'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
 -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제외) 홈페이지 확인 시, (필수서류)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성략
 -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'상세'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'정부24(www.gov.kr), 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출력 가능
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
 - 07.12.31 이전 사망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
 - '인후와의 관계' 및 '호주승계사유'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
- *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, 보호종료확인서, 기본증명서,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
 *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

- 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- 주2) 실종 증명 서류: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신고 신고증(법원), 거주불명자증(초)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)
- 주3) 재외국인·외국인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,
 - ① 재외국인(재외국인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 외국인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사실증명원, 여권사본,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포함))
- 주4) 주민등록등본: '학생 단독세대주' 또는 '가구원과 동일세대' 여부 확인필요
- 주5) 폐쇄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'폐쇄'가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
-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,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 확인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)
- 주7) 주민등록초본: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
- 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
구분	자격명	비고	발급처
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※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	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'정부24(www.gov.kr)
	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	
차상위계층	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	주민자치센터
	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	장애연금 수급자 확인서	
	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	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	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
	차상위자활대상자	자활근로자 확인서	
	차상위본인부담감경대상자	차상위 본인부담감경대상자 증명서	
	차상위 계층 대상자	차상위 계층 확인서	

신청완료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,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성략
 기초,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(미혼은 부 또는 모,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) 명의의 서류 제출,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
 장애인 증명서류
 제출서류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 발급처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'정부24(www.gov.kr)
 자녀여가구(학자금 신청자의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 증명서류
 제출서류
 미혼(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/자매 수 서열 확인):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 기혼(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):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 발급처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'정부24(www.gov.kr)
 자녀여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 *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- [장학금신청] - [서류제출현황]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